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11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8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19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 또한, 조례의 각 조문 중 어려운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수(數) 확대 및 임시 위원 위촉사항 신설 (안 제5조, 제8조)
 - 20명 → 30명
-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마련 (안 제

19조)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영향검토 구역) 조항 조정 및 신설 (안 제49조)
 -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
 - 도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
 - 영향검토지역내 인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 실시 조항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충청북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하여 명시하고, 문화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보호·육성·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완하였음.

또한, 도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3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2.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및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4.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6.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장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와 충청북도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6.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 허가
7.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 선정
8.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9.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10.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및 전수 장학생 선정과 해제
12. 그 밖에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와 장소
- 2. 출석 위원
-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가 된 경우
- 3.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또는 기피할 수 있다.

제15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제17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문화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제19조(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문화재보호·보존·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충청북도 안에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세계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2조(세계유산 등의 보호·관리)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 또는 선정 신청 중인 유산에 대하여 별도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세계유산추진위원회 설치) ① 세계유산 등의 등재 또는 선정 신청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0명 이내의 학술자문단과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1. 세계유산 등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 지구, 등재된 유산에 대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유산 등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정 및 해제

제2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 2.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26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군수는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8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2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나 인정의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도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에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무형문화재의 지정취지와 어긋난 보존관리 행위 또는 원형보존 및 전수 교육이 부적합한 경우

③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른다.

⑥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가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지정한 문화재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24조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문화재 지정 방법에 따른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군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의 의견 또는 지정하려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군 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시·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29조를 따른다.

제35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 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6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1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35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군수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도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나 동물보호단체

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반출금지)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호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5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4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보유한 기능 또는 예능(이하 “가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전수 교육)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 이수증의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이나 예능심사 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조교는 제42조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전수 장학생) ①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명령)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②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수리 등)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와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사항

제48조(문화재수리 용역 시공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수리업자의 기술 수준과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문화재 수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 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의 검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때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
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1.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
2.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
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도지사, 시장·군
수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문
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과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나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
부
5. 수계·수량 변경이나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 경관이나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7.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④ 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현상변경)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손실의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2조(시·군의 경비부담)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수리,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45조제1항, 제49조, 제51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및 조사

제54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56조(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예능의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나 관리 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와 이전

6.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조사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5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5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0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시장·군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에 매장 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명예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5.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45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
3. 제4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경미한 수리

제64조(문화재방재의 날)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청문) 제35조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 변경 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 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⑦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 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설립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흥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

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 법 예 고 의 건

1.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내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수(數) 확대 (안 제5조, 제8조)
-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책 수립 및 시행 신설 (안 제19조)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관리,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 세계유산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영향검토 구역)를 축소 (안 제49조)

2. 제출된 의견

- 문화재위원 위촉 해제 요건 강화, 도난예방 조항 추가, 문화재방재의 날 조례 신설(문화재청)
- 문화재 일반에 대한 보호 사항 추가, 주체 및 지역 한정(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3.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위촉 해제 요건 강화를 위해
 -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반영
 - 매장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및 임직원에게 대한 해촉 의견 반영
- 문화재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사항에 추가를 위해
 - 문화재 도난예방 사항에 대한 의견 반영
- 문화재방재의 강화를 위한 방재의 날 신설을 위해
 - 방재의 날 신설을 통한 문화재 재난 예방을 위해 의견 반영
- 조례 제정의 주체 및 지역 한정을 위해
 - 문화재 지역 한정을 위해 도지정문화재로 의견 반영

4. 수정(안)

- 문화재 수리업자 항목 세분화 (안 제13조)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 매장문화재 조사법인 관련 대표자 및 임직원 해촉 조항 신설 (안 제13조)
-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명기 (안 제17조)
- 세계유산 등재의 주체 및 대상 명기 (안 제21조)
- 문화재방재의 날 신설 (안 제64조)

5. 조치결과

-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수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11.23.)